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의2] <개정 2013.12.11>

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

실제경력	간주경력	
1.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3의2(전문경력 관) 및 별표 4(공안 업무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1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의 6급 이하 경력 6급 공무원의 7급 이하 경력 7급 공무원의 8급 이하 경력	6급 경력 7급 경력 8급 경력
2. 별표 8(일반직 우정 직군 등)의 봉급표 를 적용받는 공무원	기능 1급 이하 기능 5급 이상 공무원의 기능 6 급 이하 경력 기능 6급 공무원의 기능 7급 이하 경력 기능 7급 공무원의 기능 8급 이하 경력 기능 8급 공무원의 기능 9급 이하 경력 기능 9급 공무원의 기능 10급 경력	기능 6급 경력 기능 7급 경력 기능 8급 경력 기능 9급 경력 기능 9급 경력
3. 별표 10(경찰·소방 등)의 봉급표를 적 용받는 공무원	치안정감 이하 경정 이상 공무원의 경감 이하 경력 소방총감 이하 소방령 이상 공무원의 소방경 이하 경력 경감·소방경의 경위·소방위 이하 경력 경위·소방위의 경사·소방장 이하 경력 경사·소방장의 경장·소방교 이하 경력	경감 경력 소방경 경력 경위·소방위 경력 경사·소방장 경력 경장·소방교 경력